

문의사항

김민철관세사 T/ 02-6011-3072 메일/ mckim@esein.co.kr

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

2015.08.20

## 한-중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제도 운영 안내

### ▶ 목적 및 시행일자

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협정이 발효되어야만 인증이 가능하지만, 한-중 FTA 협정 발효 전에 對中 수출기업들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 받아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간이하게 원산지 증명서 발급 혜택\*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.

\* C/O 발급시 첨부서류 생략 및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 효과

ㅇ시행일: '15. 8. 24(월)

### ▶ 적용대상

- o 한-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
- ▶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 제도 운영절차
- ㅇ (신청) 타 협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증 신청
- o (심사) 한-中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심사
- ㅇ (가인증)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인증서 교부

# 붙임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서 신청서

### 한-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신청서

T. A				TI A OLTI					-1-	-1-1-1		21			
접수번호	_			접수일자					저대	리기간	20 9	길			
		상호	(한글)			사입	감자등	록번호							
		<b>T</b> A	(영문)			FII	<del></del>	(きロ)							
_		주소	(한글)				표자 성명								
1. 신청인	I		(영문)					(영문)							
	전	전 화 번 호				팩	스 번	호							
	E-n	nail 주	소			인 증 번 호									
								※ 세관에서 기재							
	업:	체별 원	산지인	l증수출자 여부	<u></u>			[	]예	[ ]	아니오				
2.	신:	청품목(	이 해딩	t 협정의 원산	]예	[ ]	아니오								
 지정요?	건 원1	산지증당	명서 직	성대장 비치	]예	[ ]	아니오								
원산지관리전담자(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) 지정 및 운영 여부 [ ]예 [ ]아니오															
		증대상			TIO	<u>    -  </u> -	.1	OL AL	-1 <b>-</b> 4 -	1 7 7					
연번	품목번호(HS6단위)			품 명	석용니	············	:엽성 원산시 		시결성	결정기준		원산지			
		리전담			T1 =1			πII 4				.,			
연번	<u>!</u> 번 성명 직위		소속부서	신 와	전화			팩스		E-mail					
「자유	유무역	 협정의	이행을	 } 위한 관세법	□ 의 특례에 괸	 ·한 법	 를 시형	 행규칙 <sub>1</sub>	제7	 조의2에	따라	품목별	원산		
지인증수출자 가인증을 신청합니다.															
									년		월		일		
신 청 인: (서명 또는 인)															
관		세		청	장										
		~게 관 7	C L	8	Ö		귀	하							
	ノ <b>ベ</b> II	판 (	ð												
	1	. 원산지	인증 신	청품목별 원산지소	 :명서										
	2	. 원산지	확인서(:	최종물품에 대한	원산지확인서로/	서 생산지	·와 수	출자가 다	른 경우	우에 한정	합니다)	수수료 없	음		
첨부서류	3	. 원산시	소명서어	l 기재된 내용을 구하는 경우에 한	입승할 수 있는	서류・점	보보 및	국내제조	확인서	(관세청증	· 또는				
		-			·										

### 붙임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서 서식

□ **한-중** FTA의 품목별 가(假)인증 시 '**가**(假)**인증서**'교부

한-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서								
○상 호	호(Name of Company ) :							
○주 소	소(Address) :							
이대 표	표 자(Representative) :							
○인 증 번 호(Customs Authorisation No.) :								
원산지인증 물품내역(List of Certified Products)								
적용대상협정 (Applicable Agreement)	품목번호(6단위) (HS Code)	품 명 (Description)	원산지 결정기준 (Origin Criteria)					

위 업체를 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 규칙」

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가인증합니다.

년 월 일

(yyyy/mm/dd)

관 세 청 장 ○ ○ 세 관 장

○ ○ Customs
The Republic of Korea

직 인 (to be sealed)

#### ※ 참고사항

- 1. 한-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(假)인증 제도는 협정발효 이후, 對中 수출기업들 의 인증수출자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- 2. 동 인증서의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, 한-중 FTA 가(假)서명본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근 거로 신청인에 대한 품목별인증수출자 지정심사를 완료하였다는 인증서입니다.
- 3. 한-중 FTA 국내비준일 이후, 동 인증서를 첨부하여 가(假)인증신청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품목 별

인증을 신청할 경우, 별도의 인증심사 없이 곧바로 정식 인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